

의정정보 2012-5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4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55
4. 행복한 책읽기	76

모두 보기

최근 제·개정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8)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16)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19)
-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25)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32)
-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34)
-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39)
-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44)
- 경상북도 구강보전사업 지원 조례(48)
- 전라남도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52)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고전, 전통문양 등 한류콘텐츠 7만건 민간에 무료 제공(57)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59)
- 백두대간 제 모습 찾기 시작(60)
-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63)
- 만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66)
- 응급 상황에서 신(神)의 한 수 : 자동제세동기(70)
-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는 110번으로(74)

행복한 책임기

- (76)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8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5.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0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 2012.5.14 시행 2012.5.14]

1. 제정이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 나.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 다.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 라.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
- 마.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 바.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재원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 2012.4.20 시행 2012.4.20]

1. 개정이유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여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법률 제11135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안 제3조의 2 및 별표 1의3 신설)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유치원 원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

나. 유치원 공시정보의 공개(안 제3조의3 신설, 안 제6조)

교육감은 유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공 절차(안 제9조의2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연계·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등의 정보제공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2012.5.14 시행 2012.5.14]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청사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開水路)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토지로 한정함.

나.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공공기관 업무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허용(안 제18조제1항제11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19조제 12호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5.1 시행 2012.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유족 사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32호, 2012. 2. 1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의 감면 범위를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 약제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 2012.5.1 시행 2012.7.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하여 교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포 2012.1.26 시행 2012.5.15]

1. 개정이유

가짜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주요 용제(溶劑)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공포, 5. 15. 시행)됨에 따라 설치·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행위 및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휘발유·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자의 석유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완화(안 제12조제1항)

석유수출입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중 저장시설의 기준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천5백킬로리터에서 30일분 또는 5천킬로리터로 완화함.

나.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비축의무 폐지(안 제19조제1항)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및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석유비축의무를 폐지함.

다. 용제수급거래상황 보고대상자인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제1호)

용제수급거래상황 보고대상자인 주요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이거나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소비자로 함.

라. 설치·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종류와 행위 구체화(안 제42조의3 신설)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정량 미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하는 행위와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하거나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함.

마. 석유거래상황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 6)

주유소·용제판매소 등에서 석유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16
2.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19
3.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5
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32
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34
6.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39
7.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44
8. 경상북도 구강보전사업 지원 조례	48
9. 전라남도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	52

1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1. 제정이유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 및 학교독서교육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학생의 독서 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하고,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등과 서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생의 독서활동이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 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에 대한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독서교육 연구비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교육청·직속 기관·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나. 우선 구매(안 제4조):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하도록 함

다.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 대부(안 제5조):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6조):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 기관·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2.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시책의 마련과 추진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등의 정보와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소속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 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교육이나 ‘1교 1사회적기업 결연’에 적극 노력하는 학교에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교직원에게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강화
3. 사회적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7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3]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 제정이유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11.12.9] [법률 제10790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12.8] [행정안전부령 제92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에만 해당한다)

4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1. 제정이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 되도록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기등 기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민의 참여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로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규정을 둠(안 제2조)
- 나. 도의 위상과 도정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위촉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업무만을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안 제5조)
- 마. 홍보대사 위촉 등에 대한 업무는 홍보 담당 부서에 총괄하도록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6조)
- 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정활동 참여시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함(안 제7조)
- 사. 홍보대사가 사임의사 표시, 품위손상, 홍보활동 기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안 제8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경기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대상)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과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6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 제정 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그럼에도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추진,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추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위촉해제, 실무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사.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분권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2.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3.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분권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해마다 야생동물(겨울철새)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피해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3조)
- 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및 어업인을 말함
- 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안 제5조)
 -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
- 라. 피해예방시설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험가입 등(안 제6조~안 제9조)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이 조례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시장·군수가 제외대상으로 조례에서 정한 경우

③ 피해보상 신청 재심의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도비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작물 등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야생동·식물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구강보건 관리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구강보건사업, 노인, 노인장애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구강보건사업의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구강보건사업 대상과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마.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시장·군수의 협의와
관련기관 자료 요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규정함(안 제9조)

차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타.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치석 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65세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
3.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 세정, 치석 제거 사업
3.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의치보철사업 후 사후관리 등)
4. 구강보건실 운영
5. 구강 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6.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 등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전라남도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가정의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정을 지원할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비, 장애인가정 돌봄 지원비,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비, 장애인가정 사례관리 지원비, 장애인가정 역량강화 지원비, 장애인가정의 상담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각종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정”이란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4. “장애인가정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지원센터”란 장애인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가정의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정을 지원할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정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정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정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정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정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문기구)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시책 및 제5조 지원 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고전, 전통문양 등 한류콘텐츠 7만건 민간에 무료 제공 57
2.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 59
3. 백두대간 제 모습 찾기 시작 60
4.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63
5. 만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66
6. 응급 상황에서의 신(神)의 한 수 : 자동제세동기 70
7.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는 110번으로..... 74

1] 고전, 전통문양 등 한류콘텐츠 7만건 민간에 무료 제공

□ 최치원의 계원필경, 박지원의 연암집 원문과 연화문 수막새 전통문양 등 공유자원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대폭 늘어난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화정보센터의 보유 자료 중 국가DB사업으로 디지털화한 약 7만여건의 자료를 5월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한국문집총간) 계원필경, 연암집 등 973건, (고전번역총서) 삼봉집, 성호사설 등 177건, (한국전통문양) 연화문수막새와당, 채화문단 복식 등 69,606건

□ 이번에 개방되는 원문 콘텐츠는 역대 선조들의 문집(한국문집총간, 고전번역총서)과 한국전통문양원형으로,

○ 계원필경(최치원), 동국이상국집(이규보), 율곡전서(이이), 연암집(박지원)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역대 선열의 문집을 디지털화하여 기계가독형 문서(XML 형식)로 제공하고,

- 연화문수막새와당 기와문양, 채화문단 복식문양 등 우리나라 전통문양을 디지털화(JPG, AI형식)하여 개방한다.

□ 이러한 원문 자료는 상업적 활용, 가공·변형 등에 필요한 저작권을 확보하여 제공되므로 일반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에 관계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활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공유자원포털에 회원 가입한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 신청을 통해 즉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단, 고전번역총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범위 한정

- 이번 디지털 콘텐츠 제공 확대는 관련 업계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한류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문집총간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용 콘텐츠, 민간 포털의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 전통 문양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 도서 표지 및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매우 높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개방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행안부에서는 국가DB사업 등으로 구축한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②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도 '현 주소지'만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 축소 및 신청 요건 강화,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동안 '현 주소지, 거주상태, 변동일자'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 주소지'만 제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3 백두대간 제 모습 찾기 시작

- 일제에 의해 허리가 잘려진 백두대간 복원이 시작된다. 그 출발은 바로 남한 쪽 백두대간의 중심인 이화령이다.
-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복원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을 연결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복원되는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大幹]로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는 고개로,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 이화령은 1925년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일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백두대간이 단절되어, 남북 종축의 생태계가 깨지고 민족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되었다.
- 정부는 이번 이화령 복원을 계기로 복원이 시급한 13군데 백두대간의 단절구간을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이화령 구간 복원 기공식’을 5월 16일 오후 2시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개최했다.
 - 기공식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백두대간보전회(대표 최중복),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대표 박재인), 백두대간진흥회(대표 홍석하) 등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특히, 백두대간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 우선,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답사한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인 셰퍼드(Roger Allan Shepherd 뉴질랜드인)씨가 참석했고,
 -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사랑해서 함께한 백두대간>이란 수필집을 쓴 남난희씨, 백두대간을 연구하고 저서도 펴낸 안양시청 공무원 현진상씨, 백두대간 영문판 가이드북을 출간한 경희대 교수 메이슨(David A Mason)씨도 참석했다.

□ 기공식 행사는 풍물패의 길놀이와 대북[大鼓]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시인 이근배 님의 기념축시 낭송,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이근배 시인은 ‘오늘 여기 국토의 대동맥을 잇는/이화령 고갯길은/저 일제의 삽날로 끊어진지 오래/상처로 남았더니/이제 아픈 세월을 씻어내고/세계로 나아가는 더 큰 나라/인류의 멘토로 나서는 더 큰 거래의/우렁찬 출정을 하는 백두대간의 첫 걸음이다.’라는 축시를 낭송했다.

○ 또한, 셰퍼드씨의 남북 백두대간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 ‘이화령 구간 복원사업’은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이어 민족정기와 얼을 되찾는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큰 사업”이라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남난희씨는 “그동안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끊어진 구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늦었지만 이화령 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 셰퍼드씨는 “백두대간은 한국인의 삶과 역동성의 근원이며 역사문화 유산의 보고”라면서, “이화령 복원사업은 백두대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셰퍼드씨는 2010년 6월 1일 ‘남·북한 백두대간 최초 종주 및 답사기’에서 “백두대간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히말라야를 세계에 알려 유명하게 만든 서구인들처럼 백두대간을 널리 알린 첫 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 화제의 인물이다.

4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

< 現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한계 >

비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A시 보건소장은 운동의 생활화, 식생활 개선 등 지역주민의 비만율을 낮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건강증진사업들은 지나치게 세분화(23개)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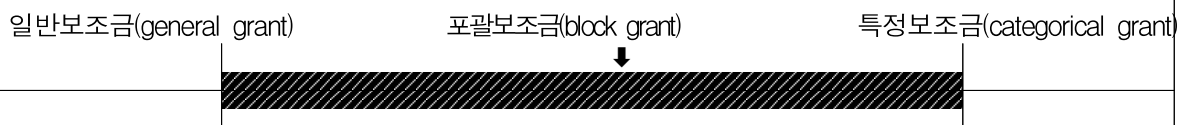
사업 성과도 중앙의 획일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산출량 늘리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 씁쓸한 맘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13년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였지만,

-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란? (참고1)

- 일반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집행(일반 교부세))과 특정보조금(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집행(대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
- ‘건강’의 경우, 지역별 건강문제가 다르므로 일정한 건강증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적합한 분야임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2)

※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 총 1,775억원(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

□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추어 사업 범위가 재편성된다.

○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기존 국고보조사업 (categorical grant)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block grant)
▶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② 지역사회중심재활 ③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④ 영양플러스사업 ⑤ 보건소 금연클리닉 ⑥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⑦ 철분제, 엽산제 지원 ⑧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⑨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⑩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⑪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⑫ 치매조기검진사업 ⑬ 치매노인사례관리 ⑭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⑮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⑯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	① 금연 사업 ② 절주 사업 ③ 신체활동 사업 ④ 영양 사업 ⑤ 비만 사업 ⑥ 구강 사업 ⑦ 심뇌혈관 예방 사업 ⑧ 한방 건강증진 사업 ⑨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⑩ 임신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⑪ 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⑫ 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⑬ 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범위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별로 채용되어 해당 사업만 담당하고 있으나 포괄보조사업에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5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7월부터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16일 9시 제12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것으로,
 -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5천원(1악당)으로 결정되었다.
 -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천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 병원 1,018천원, 종합병원 1,060천원, 상급종합병원 1,103천원

-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기로 하였다.
 -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0천원(의원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 * 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 *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 :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 (변경)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되었다. (소요재정 178백만원)
 - 다만, 가산 확대에 의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09년 치면열구전색술은 소아의 건전한 치아 보호를 위한 보장성 차원에서 만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를 급여화하였다.
 - 이후 해당 연령의 충치 치료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소아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 소아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져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건정심에서는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9월 시행 예정이며, 약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하였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 복지부는 지난 '11.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수가 도출을 위하여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11.12~'12.5월, 총7회)해 왔으며,
 - 절차 하자로 지적되었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2차례(5.8, 5.15) 거쳐 금번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6] 응급 상황에서의 신(神)의 한 수 : 자동제세동기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 길가에 펼쳐진 화려한 벚꽃의 향연을 보며 걷노라면 어느덧 자신이 한 폭의 동양화 속 주인공이 되어있는 상상을 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상상 속의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만약 벚꽃놀이 장소와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 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야외활동 공간 등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심장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에 누구나 쉽게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장치이다. 즉 자동제세동기는 사용자가 전극 패드를 환자의 심장에 붙이고 기기를 동작시키기만 하면,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이상 박동을 감지한 뒤 적절한 제세동 처치를 하여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붙임 1).

특허청(청장 김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특허출원건수는 38건으로 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붙임 2).

자동제세동기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 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방전 회로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들이 대부분이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 위험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융합된 원격 진료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가 원격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환자의 효과적인 처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출원 건수 중 주목되는 점은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증가이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기존의 응급의료법이 소위 ‘선(善)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면책규정을 수용하여 개정(2008. 12. 14. 시행)된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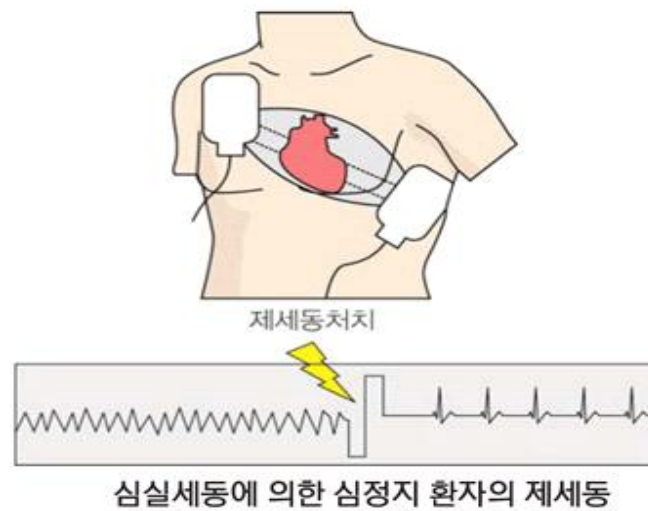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누구나 위급한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자동제세동기 시장이 확대될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산업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와 관련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잘 어우러져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자동제세동기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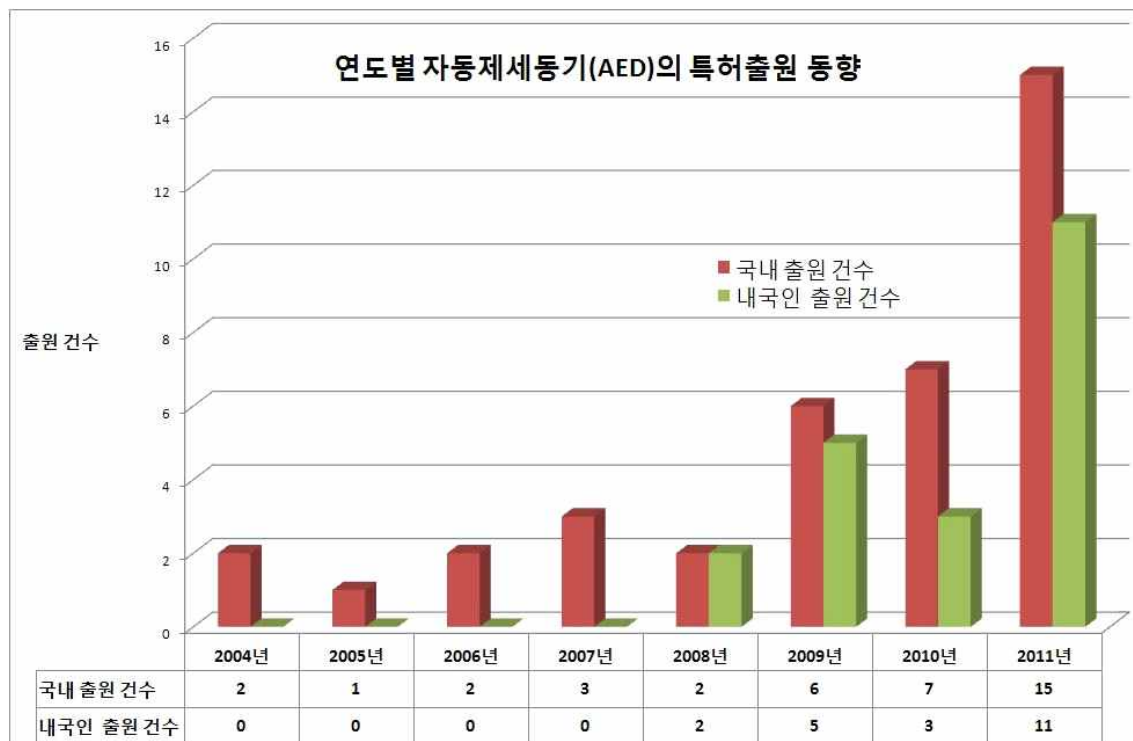
최근 들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져 자동제세동기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꼭 배워 두기를 권하고 싶다.

[붙임 1] 자동제세동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 작동원리 : 기기의 전극부를 환자의 심장부 근처에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기기를 동작시키면 자동으로 기기가 심장의 이상박동을 감지한 뒤 적절한 제세동 처치를 하여 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림

[붙임 2] 최근 10년간 제세동기의 연도별 국내 특허출원 동향



7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는 ☎110번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 내콜센터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 민원사례 예시

- 제 앞으로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고지서가 왔어요. 기분 나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 옆집은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보내** 주세요?
- 신상정보 고지서 내용 중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무슨 말인가요?
- 제가 받은 신상정보 고지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국민들에게 좀 더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익위 ☎110 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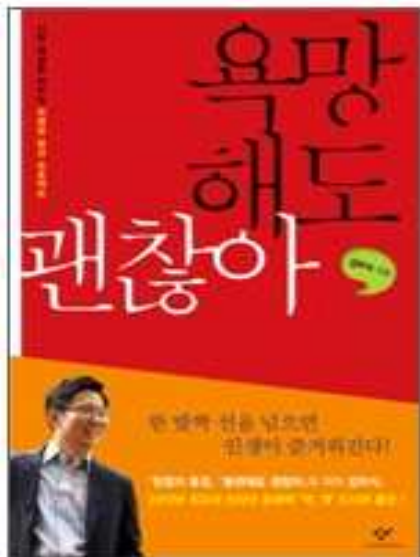
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년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110콜센터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시행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상담대행 서비스와 이번 법무부 상담대행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10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110번으로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반행정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다.

☎110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 상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 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행복한책읽기



- ☐ 도서명 : 욕망해도 괜찮아
- ☐ 저자명 : 김두식
- ☐ 출판사 : 창비
- ☐ 출판년 : 2012. 5. 18
- ☐ 페이지 : 312쪽
- ☐ 가 격 : 13,500원

‘헌법의 풍경’ ‘불편해도 괜찮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종횡무진 파헤쳐온 김두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작 ‘욕망해도 괜찮아’가 출간되었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책의 주제는 바로 ‘욕망’! 그가 기존에 펴냈던 사회과학서나 인문서가 아닌 에세이로, 그동안 법, 인권 같은 어려운 주제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온 저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욕망’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사회와 개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색한다. 흔히

‘욕망’ 하면 억누르고 감춰야 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저자는 욕망을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친구로 본다. 이에 욕망을 억압하는 기제, 분출되지 못한 욕망의 부작용과 일탈자에 대한 마녀사냥 식 대응, 남녀노소가 모두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의 진정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소재와 사회 현상,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이 책이다. 유쾌하고 진솔한 글쓰기, 치밀하고도 가독성 높은 문체, 완성도 높고 에세이의 세계를 선보이는 이 책은 올 상반기 우리 독서계의 큰 화제가 되리라 본다.

이번 글은 창비 인터넷 블로그 ‘창문’에서 6개월가량 연재되었다. ‘색, 계’라는 제목으로 매주 업데이트된 글은 트위터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연일 화제가 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애초 주제가 ‘대한민국 아저씨들의 욕망과 규범’이었음에도, 중년남성뿐 아니라 여성들과 20~30대 젊은 세대들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것은 그가 “부탁받지 않아도 서둘러 ‘멘토질’을 자처하는” ‘꼰대’가 아니라 “여전히 자라는 과정에 있는” ‘소심한 아저씨’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프로로그’에서 ‘나는 멘토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건 다양한 세대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기존의 ‘법학자’라는 딱딱한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 열정과 욕망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한다.

40대 중반에 이른 저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한 발짝 선을 넘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2012년 최고의 인터넷 화제작 김두식의 ‘색, 계’ 출간

법학자 김두식, ‘소심한 아저씨’로 돌아오다!

‘헌법의 풍경’ ‘불편해도 괜찮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종횡무진 파헤쳐온 김두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작 ‘욕망해도 괜찮아’가 출간되었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책의 주제는 바로 ‘욕망’! 그가 기존에 펴냈던 사회과학서나 인문서가 아닌 에세이로, 그동안 법, 인권 같은 어려운 주제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온 저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40대 중반에 이른 저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겪고 있는 생각의 변화는 20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 그런 저이기에 이번 글을 통해 멘토가 아니라 여전히 자라는 과정에 있는 40대의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불타고 있는 소년 소녀의 열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열정과 욕망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지만 이 책의 표현대로 “고백이 없는 사회는 억압이 활개 치기 좋은 토양”이 된다. 숨막히는 규범에 억눌려 제때 건강하게 분출되지 못한 욕망은 대개 적절치 못한 타이밍에 비뚤어진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분출된 욕망들은 비정상적인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욕망의 역습 앞에 쓰러진 희생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캔들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모방욕망과 무한경쟁이 불러오는 우리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정아씨 사건이다. 학벌, 권력, 섹스, 모두가 욕망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로 잘 버무려진 이 스캔들 앞에서 사람들은 열광했고, 너나없이 희생양을 향해 돌을 던졌다.

여기서 저자는 희생양에게 돌을 던지느라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냥꾼’의 존재에 주목한다. 일탈자의 반대편에 서서 “누가 남몰래 행복한지” 눈을 번뜩이며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스캔들이 터지면 거리낌없이 돌부터 던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한다. “당신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중년이 되어 불륜을 저지르는 일탈자가 되거나 욕망을 숨긴 채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저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비슷한 욕망을 품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욕망의 역습에 처참하게 쓰러지는 일도, 쓰러진 희생양을 과도하게 짓밟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일탈하는 아저씨! 사냥꾼이 된 아저씨는 정반대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쌍둥이입니다. 다만 욕망을 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그런데도 사냥꾼이 된 아저씨들은 마치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검사와 기자의 바로 뒷자리에 서서 희생양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도 그런 소년이 존재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양 사냥이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시점에 잠깐 멈춰서서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지’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스캔들의 중심에 선 희생양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희생양 양산의 메커니즘을 깰 수 있습니다. -3장 ‘사랑에 빠진 아저씨’에서

욕망, B형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것

‘욕망의 인정’과 함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욕망과의 공존 또는 화해’다. 어려서부터 규범을 강요받으며 자라온 우리는 대개 욕망이란 잘 숨기고 억눌러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구조다. 원래는 10~20대 때 건강하게 욕망을 분출한 후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욕망을 잘 억제한 사람이 ‘훌륭한 어른’이 되고 사회지도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욕망은 점점 더 마음속 깊숙이 숨어들어간다.

저자는 이런 욕망을 ‘B형간염 바이러스’에 비유한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몸속 면역체계의 과도한 투쟁 때문에 간암이나 간경화로 발전해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욕망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야 할 욕망을 무작정 억누르고 숨기기만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 쉽다. 때문에 저자는 B형간염 바이러스처럼 욕망을 살살 잘 달래면서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욕망과 공존 또는 화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백’이다.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고백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백이 없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사냥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신의 욕망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는 우리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때문에 저자 역시 이 글을 통해 욕망의 건강한 고백을 시도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동행해온 욕망을 바이러스처럼 살살 달래면서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없애겠다고 싸우고 불화하다 보면 ‘멘탈붕괴’가 오는 거죠.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건강한 몸을 쓰러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 돌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의 고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고백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희생양 양산구조를 깨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 고백을 들어줄 귀가 없는 사회에서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이 없는 곳에서는 성찰이 아니라 사냥만이 힘을 얻지요.

-9장 고백은 나의 힘에서

위로와 공감을 주는, 우리 모두의 욕망 이야기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글이기도 하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저자 개인의 오랜 욕망을 인정하는 1장에서부터 스캔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생양 메커니즘과 중년남성의 욕망을 살펴보는 2, 3장, 청춘들에게 욕망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정신승리 비법을 전수하는 4장, 가족 이야기를 통해 중산층의 은밀한 욕망과 과도한 규범을 관찰하는 5, 6장, 몸과 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는 7장,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믿어온 규범이 실상은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8장, 그리고 책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9장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들려주는 욕망과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분석틀이 되어준다.

또한 이 글은 저자 개인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저자는 ‘살아 있는 이야기’라는 열쇠로 오래 채워놓았던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역시 자신의 밑바닥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도 같은 욕망이 숨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읽어봐야 할 이유다.

따라 읽기 쉽고 유쾌한 글과 매우 치밀하고 섬세한 김두식의 문장들은 잘 쓴 글을 읽는 재미까지도 선사해줄 것이다. 올 상반기 독자들과 출판계에 큰 화제를 몰고 올 만한 책이 분명하다

□ 저자소개 《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 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고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략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 『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뀌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 등이 있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2년 5월 22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